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73
----------	-----

2013년 7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년 3월 24일, 윤명화 의원(1명)
-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3월 31일
- 다. 상 정 일 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2년 6월 21일 상정·질의토론)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3년 7월 5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명화 의원)

-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가. 본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우리의 우수한 전통 식생활 양식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먹거리는 다양해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기회가 줄어들어 따라 어른으로부터 식사예절을 배울 기회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대응하여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며,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안의 제정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봄.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4호)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 제4호는 “학교”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법 제2조1)를 살펴

1)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 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보면 “학교”에 대한 정의는 없고 “유치원”에 대한 정의만 있을 뿐임.

- 따라서, 안 제2조에 “유치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원안에서 학교나 어린이집에 적용하도록 한 부분²⁾을 유치원에도 적용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다. 법령의 조·항(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법령의 본칙은 조로 구분하며, 하나의 조문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문을 ‘항’³⁾이나 ‘호’⁴⁾로 구분함.
 - 이 때 ‘항’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하고, ‘호’는 단어나 어절의 형식으로 하거나 ‘...할 것’ 등과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함.
- 그런데, 안 제5조는 그 내용이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그 구분은 1., 2. 과 같이 ‘호’를 사용하고 있음.
 - 이는 ‘조·항·호·목’이라는 법령 체제에 맞지 않으므로, ‘호’가 아닌 ‘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지역 내 생산자 또는 지역 농수산물(안 제5조 제4호)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 제4호는 식생활 교육이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2) 이를테면, 안 제6조 제2항 제4호, 안 제11조 제2항 제5호 등.

3) ‘항’은 ①, ② 등과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함.

4) ‘호’는 1., 2., 등으로 표시함.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서울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그 규모가 미미하며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해당 농가에서 바로 소비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생산자도 업으로서 농수산활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지역’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농수산물 생산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서울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안 제5조 제4호에서 ‘지역’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게 되면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도 의미를 잃게 되므로, 안 제5조 제4호를 “④ 식생활교육은 농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위원 구성(안 제9조)에 대한 검토

- 안 제9조 제3항은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그 외의 위원(위촉직 위원)으로 나누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기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그 외의 위원은 안 제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령에서 위원의 자격을 규정할 경우, 당연직 위원은 그 대상이 누구 인지를 특정할 수 있게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촉직 위원은 위촉권자가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을 ‘범주로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위원을 조직 내부 구성원 중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임명’이란 용어를, 조직 외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그런데 안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동 조항에서 당연직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관 공무원’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내용상 상충될 뿐만 아니라, 법령성안의 원칙상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이라는 고유직위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또한 내부 구성원을 위원으로 정하면서 ‘임명’이 아닌 ‘위촉’이란 용어를 쓰는 것도 부적절함.

따라서 위원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9조는 전반적으로 당연직 위원과 그 외의 위원(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백히 하여 이를 알기 쉽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학교교육과정에서 식생활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올바른 식생활교육에 있어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학교교육의 주체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식생활교육에 있어 학교의 역할이 중대하므로 서울시 교육청의 위와 같은 의견을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봄.

○ 또한, 위촉직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식품관련업체에는 식품유통업체외에도 식품제조업체, 식품가공업체, 식품판매업체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식품유통업체 대표”에 한정할 것은 아니므로 제6호를 “식품관련업체 대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론적으로 안 제9조는 제2항의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속해 있는 실장”은 “복지건강실장”으로 수정하고, 제3항은,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그 외의 위원으로 하되, 행정1부시장, 복지건강실장, 서울시 교육협력국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2.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5. 식품관련업체 대표
6. 소비자단체 대표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안 제11조)에 대한 검토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 2 제1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11조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문제됨.
- 이에 관해 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자문결과, 시가 직접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민간영역에서 규정에 맞게 설치하면 시는 지정하도록 한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동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 권한에 대하여 규율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의 한계를 일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설치불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이에 따르면 안 제11조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설치”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식생활교육지원조례」 관련 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자문결과

고문	자문 의견	결과
강장석 고문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 직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내용적으로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감독함이 바람직하다고 봄.	설치 불가
김진석 고문	조례로 식생활교육센터로의 지정을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기관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양자(지정센터-설치센터) 사이에 역할의 중복 등을 피하기 위하여 상호 목적 사업의 조절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설치 가능 (단서 있음)
박현석 고문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즉 지방자치단체 장의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 권한에 대하여 규율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의 한계를 일탈할 가능성이 있음.	설치 불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시의회의 법률자문 결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직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식생활교육이 근본이 정신이기 때문에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 질의 : 현재 운영 중인 '식생활정보센터'를 연말까지 운영하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그 기능까지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새로운 위탁체가 선정되면 '식생활정보센터'의 기존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람.
- 답변 :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소비정책과)를 통해 국비지원이 일부 있어 우리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그리고 연말까지 종료되는 '식생활정보센터'의 인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할 때 고용승계 여부를 검토해 보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 이유

-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해촉규정을 마련하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

나. 수정 주요 내용

- 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등으로 함 (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항을 명시함 (안 제9조 제6항)
-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제1항)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73
----------	-----------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5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해촉규정을 마련하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등으로 함 (안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
- 나.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항을 명시함 (안 제9조 제6항)
- 다.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 지원센터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식생활교육지원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 나. 기 타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 각 ‘호’를 ‘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농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8조 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속해있는 실장·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
3. 식생활관련 단체 대표
4. 식품관련 단체 대표

5. 관련기관 공무원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제11조 제1항 중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1.~3. (생략) 4. <u>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제9조(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속해있는 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은 시장이 관련 기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 교육협력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3.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5.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6. 식품유통업체 대표 	<p>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u>식생활교육은 농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9조(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속해있는 실장·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 3. 식생활관련 단체 대표 4. 식품관련 단체 대표 5. 관련기관 공무원

원 안	수 정 안
<p>7. 소비자단체 대표</p> <p>8.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p> <p>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p> <p>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p>

원 안	수 정 안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제 2항</u>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생략)</p>	<p><u>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원안 제2항과 같음)</p> <p>④ ----- <u>제 3항</u> -----</p> <p>⑤ (원안 제4항과 같음)</p> <p>⑥ (원안 제5항과 같음)</p>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식생활 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식생활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교육은 농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어린이집, 지역사회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식생활교육의 평가) 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따라 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밖에 서울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속해있는 실장·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
3. 식생활관련 단체 대표
4. 식품관련 단체 대표
5. 관련기관 공무원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연계망 구축 지원
 3.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지원
 4.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5.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6. 다른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7.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1.~3. (생략) 4. <u>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제9조(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속해있는 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은 시장이 관련 기관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 교육협력국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3.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4.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5.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6. 식품유통업체 대표 	<p>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u>식생활교육은 농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9조(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속해있는 실장·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 3. 식생활관련 단체 대표 4. 식품관련 단체 대표 5. 관련기관 공무원

원 안	수 정 안
<p>7. 소비자단체 대표</p> <p>8.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p> <p>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p> <p>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p>

원 안	수 정 안
<p>② (생략)</p> <p>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제 2항</u>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⑤ (생략)</p>	<p><u>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③ (원안 제2항과 같음)</p> <p>④ ----- <u>제 3항</u> -----</p> <p>⑤ (원안 제4항과 같음)</p> <p>⑥ (원안 제5항과 같음)</p>